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0,655,981	12,319,679
일반회계	393,434,386	11,803,032
특별회계	17,221,595	516,648
기타특별회계	17,221,595	516,64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241,213	37,236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3,575,858	107,276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483,658	44,51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58,338	4,75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220	1,987
드림빌특별회계	2,787,735	83,632
건축진흥특별회계	477,061	14,312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138,482	34,15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293,030	188,791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181,25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